

IV종교법인 과세실태(부제/일본)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여러가지 세금이 과세되지만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본래의 활동인 종교 활동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비과세 하는 등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와 비교하여 세제상의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각 세목별 비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세 목	비과세범위
법인세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특별,직할,도민)세 법인(시,읍,면민)세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사업세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소득세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이익의 분배, 잉여금의 분배
등록면허세	경내지 및 경내건물의 취득등기
관세	세외국으로부터 기증한 의식 또는 예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인지세	금전 및 유가증권의 수취증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경내지 및 경내 건물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가옥
특별토지보유세	수증한 종교활동용 토지
사업소세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소

1. 법인세

종교법인의 본래의 목적은 종교의 교리를 보급하고 의식행사를 통하여 신자를 교화육성하는 것이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과 법인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법인 등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은 비과세 하고있다. 다시 말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소득이 제한된 소득에 관한 회계와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그 법인의 본래적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구분경리한다.

(1)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지만 이 경우 수익사업이란 다음에 계기한 34 종류의 사업으로서 계속하여 사업장을 두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사업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부수행위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물품판매업	부동산판매업	금전대부업
물품대여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통신업, 방송업	운송업, 운송취급업	창고업
청부업	인쇄업	출판업
사진업	대석업(집회장 등)	여관업
요리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선업	대리업
중매업	도매업	광업
토석채취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홍행업	유희소업
유람소업	의료보건업	기예교습업
주차장업	신용보증업	무체재산권 제공업
근로자파견업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령 그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라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 등을 영위하는 사업이 이들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실태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수익사업 해당여부의 구체적인 판정사례

종교법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의 판정사례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의 판매

부적, 사례, 점보는 제비 등의 판매와 같이 그 판매와 매입원가의 관점에서 보아 그 차액이 통상적인 물품판매업의 매매이윤이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물품의 배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품판매업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성질의 물품(예를 들면 그림엽서, 사진첩, 달력, 향, 초, 꽃, 염주, 기념스탬프첩, 베틀과 떡, 문진, 메달, 방패, 페난트, 열쇠고리, 잔, 국자, 저, 도기 등)을 통상판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물품판매업)에 해당한다.

덧붙여 향이나 양초, 꽃 등을 배포하더라도 오직 참배시의 신전, 불전 등에 올리기 위하여 하사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②분묘지 임대

종교법인이 분묘지를 임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분묘지 임대는 그 사용기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 그 임대초기에 「영대사용료」로서 일정한 금액을 일괄 징수하는것도 포함한다.

③경내지 등의 시설임대

종교법인의 경내지나 본당, 강당 등의 시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유흥 또는 위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는 전부 수익사업(대석업)에 해당한다. 회의, 연수 등의 오락, 유흥 또는 위안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도 국·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임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 한다.

④숙박시설 경영

종교법인 소유의 숙박시설에 신자나 참배인으로부터 숙박료를 받는 행위는 그 숙박료를 어떠한 명목으로 받아도 수익사업(여관업)에 해당 한다.

그러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간이 공동숙박 시설에서 그 숙박료가 모든 이용자마다 1박에 1천 엔(식사포함의 경우 1천 5백 엔)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여관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⑤소장품 등의 전시

종교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 또는 위탁보관을 받은 물품을 상설장소인 박물관 등에서 관람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⑥다도, 꽃꽂이 등의 교습

종교법인이 다도교실, 꽃꽂이교실 등을 개설하여 다도, 꽃꽂이 등 특정한 기예를 교습하는 것은 수익사업(기예교습업)에 해당 한다.

이 경우 특정한 기예로서는 다도, 꽃꽂이 이외에 양재, 바느질, 의복입기, 편물, 수예, 요리, 이용, 미용, 연극, 연예, 무용, 무도, 음악, 그림, 서도, 사진, 공예, 디자인(도안 포함) 등이 있다.

게다가 이들 기예교습에는 통신교육에 의한 기예교습 이외에 면허, 졸업자격, 단수, 급, 사범, 기예분야 유명자 등의 일정한 자격, 칭호 등 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 한다.

⑦주차장 경영

종교법인이 경내 일부를 시간제로 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수시로 주차시키는 외에 월약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동일인에게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주차장업)에 해당한다.

이외에 주차장에 적합한 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일괄하여 임대하는 것도 같은방식으로 취급된다.

⑧결혼식장 경영

종교법인이 신전에서 결혼, 불전에서 결혼식 등을 행하는 행위가 본래의 종교활동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식 후의 피로연장소로 대여하거나 음식물 제공, 의장 등의 물품제공, 기념사진촬영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구분경리

종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수익사업에 관한 수지, 자산 및 부채와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수지, 자산 및 부채를 구분경리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 또는 손실액에 대하여는 그 비용 또는 손실의 성질 등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면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배부하며 배부한 바에 따라서 경리한다. 그리고 자산의 구분경리는 실제로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공통사용되는 자산(각각의 사업에 전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 자산으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하고 결산 시에 그 상각 비를 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익사업의 경비로 계산하는 것도 관계없다.

(4) 수익을 본회계에 편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공익사업인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함이므로 수익사업의 수익을 종교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기부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20%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5) 세무서 제출

종교법인이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날 이후 2 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신고 및 납부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와 함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익사업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이외에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2. 원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급여나 보수·요금 등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시에 일정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회사나 협동조합은 물론 학교, 관공서 및 개인이나 인격 없는 사단·재단이라도 전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종교법인에 있어서도 그 대표임원이나 직원 등에게 급여나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혹은 세리사 등에게 보수·요금,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지급시에 소정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 소비세

(1) 납세의무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종교법인도 면세사업자(전전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1 천만 엔 이하 종교법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과세대상

소비세의 과세대상 판단기준은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의 구분에 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가성이 있는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되는가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기부나 증여행위로 금품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금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되어도 소비세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사회정책적인 배려에서 일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비과세

거래로 취급하여 소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종교법인의 관계에서는 토지임대, 유아원 수업료(보육료), 입원료, 입원검증료 및 시설설비비 등이 있다. 한편 보물관 등에의 입장료는 소비세법상 비과세로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요금 등으로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소비세의 부담을 주게된다.

종교법인이 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비세의 과세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	과세, 불과세 등
장의, 법요 등에 동반된 수입 (계명료, 보시, 신전에 바치는 요금 등)	불과세
부적, 사례, 점보는 제비 등의 판매	불과세
그림엽서, 사진첩, 달력, 향, 초, 꽃 등의 판매	과세 단, 향, 초, 꽃의 판매 중, 참배할 때 신전·불전 등에 바치기 위하여 하사하는 물품의 배포는 불과세
영대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분묘지의 임대	「토지임대」로 비과세
묘지, 묘원의 관리료	과세
주차장 경영	과세
토지나 건물의 임대	토지임대는 비과세 건물임대는 과세, 단 주택임대는 비과세
숙박시설(절의 숙소 등)의 제공(1박 2식 1,500엔 이하)	불과세
신전결혼식, 불전결혼식 등의 행위 · 예식행위로서 본래의 종교활동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 · 예식 후 피로연때 음식물 제공 · 예식을 위한 의장 기타 물품의 대부	불과세 과세 과세
유아원 경영 등 · 유아원의 경영 · 제복, 제모 등의 판매 · 노트, 필기구 등 문방구의 판매	보육료 · 입원료 · 입원검증료 · 시설설비비 등은 비과세 과세 과세

상설 미술관, 박물관, 자료관, 보물관 등에서 소장품의 관람	과세
신문, 잡지, 해설·법화집, 경전 출판, 판매	과세
다도, 꽃꽂이, 서도 등의 교습	과세
배관료	불과세

(4)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인 종교법인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소비세액 및 지방소비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세청(2014) 「2014 년판 종교법인의 세무 -원천소득세와 법인세·소비세-」

田中義幸·繁田勝男·神山敏夫·神山敏藏(2014 년) 「종교법인의 회계의 전부- 「종교법인회계의 지침」 축조해설과 회계·세무실무【개정판】」 세무경리협회

일본템플원·조일세리사법인·조일비지네스솔루션(주)

편(2012 년) 「도해 종교법인의 법무·회계·세무」 중앙경제사